####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24. 9. 30.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서

#### 1. 경 과

의안 제404호로 2024년 9월 13일 전승관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진동과 비산먼지가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 적법한 처리를 권고하여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사장 환경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안 제7조)
- 나. 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안 제8조)
- 다.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안 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현행 조례는 생활소음저감에 대해 규정되어 있어, 최근 사업 장 및 공사장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비산먼지에도 적정하게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상위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발의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 안 제3조는 및 제4조는 구청장,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5조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지역 사전심사 규정과 그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6조는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7조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8조는 특정공사장 관리에 대한 사항 규정
- 안 제9조는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10조는 사업자의 자율참여 권고에 대행 사항 규정

#### O 검토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및 비산먼지는 구민들에게 정신적 및 물리적 피해를 입힐 수 있음. 이에 해당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두어 구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함을 목적으로 하고 구청장 및 사업장의 책무도 함께 규정하여 생활소음 등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심을 기울여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우리 구의 경우 해마다 공사장과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해 불편 민원사항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건설 수요나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의 폭이 있을 수는 있으나 특히 2023년은 코로나 19의 사실상 종식으로 수많은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생활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음. 아울러 영등포는 재개발과 지식산업센터 건설 등이 다수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어 생활소음 등에 대한 노출 횟수가 더욱 빈번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 연도별 소음, 먼지, 기타 민원 발생 현황

	계(건수) (A+B +C)	소음					
연도		공사장	사업장 (공장, 실외기, 확성기 등)	기타 (행사, 이동소음 등)	소 계 (A)	먼지 (B)	기 타 (매연 등) (C)
2024.8.	2,984	2,022	430	122	2,574	159	251
2023	5,716	4,133	786	185	5,104	287	325
2022	5,003	3,539	412	157	4,108	254	641
2021	4,085 2,946 397 1		142	3,485	198	402	
2020	3,914	2,279	586	392	3,257	172	485

- 이에 따라 생활소음 등의 저감을 위해 특정공사장 및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사전심사 실시하고, 생활소음과 진동의 측정 및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를 규정으로 명시화함. 아울러 생활소음 등의 규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후속 조치를 강화하여 규정하고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비산 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임.

#### □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현황

연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건수	특정공사 사전신고 건수
2024.8.	55	54
2023	76	103
2022	106	169
2021	125	199
2020	97	139

- 우리 구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신고를 통해 발생신고 사항과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사업장 및 공사장 주변 환경관리를 지도·점검(중점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고 에어방음벽 설치, 휴무일 기동반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제명을 변경하고 저감 실천 범위 확대를 통해 구민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화된 행정의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대한 의무감과 동시에 자율적인 참여는 구민들의 기본권 보장 확보로 이어져 구민들의 불편이 감소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 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근거하여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 자료

#### 1 소음 · 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2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 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 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 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12. 29.> ④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 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2020. 12. 29.>

- ⑤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2020. 12. 29.>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12. 29.>

####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있다. <개정 2013. 5. 24.>

- 1. 시멘트 제조업자
-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 3. 석탄제품 제조업자
- 4. 건축물 축조공사자
- 5. 토목공사자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

배	출	공	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	o‡	적		가. 야적물질을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 것 나.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 보관·저장시설은 가능하면 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 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신기의	각 내리	<u>박</u> 기	가.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 내에서만 분체상물질을 신거나 내릴 것 나. 신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 시설(물뿌림반경 7m 이상, 수압 5kg/c㎡ 이상)을 설치할 것
3.	수	송		가.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할 것 나. 다음 규격의 세륜시설을 설치할 것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물뿌림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다.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를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라.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

비고: 시·도지사가 별표 15의 기준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 2. "분체상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3.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

- 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
- 4. "특별관리지역"이란 단지지역내 건축물축조공사의 연면적이 비산 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 최소규모의 100배 이상 또는 굴절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되는 공사장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5. "특별관리사업장"이란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된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말한다.